

울산지방법원 2024. 10. 8 선고 2024가단244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9. 24.

판 결 선 고 2024. 10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목록 기재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3.76㎡를 인도하고,
나. 2023. 2. 29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,8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, 불출석)

판사 이동욱

별지